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코너에서는 정보제공업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과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Q&A 형식으로 제공한다.

■ 조소연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Q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관심 분야에 대한 뉴스클리핑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뉴스의 특성에 따라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구별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우리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단순 기사는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사보도일지라도 기자의 견해나 평가 즉 사상·감정이 표현된 경우(특히 사실이나 논평)에는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물이 인정되는 기사를 이용(뉴스클리핑 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기사 작성자 또는 저작권이 신문에 유보된 경우에는 신문사)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법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더욱이 관련 판례도 축적되지 않아 보호대상 여부 판단에 혼란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단순 사실 전달'의 의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각종 통계자료 등의 사실적 정보나 육하원칙에 의거한 단순한 사실 내용으로 작성된 기사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사실, 논평 등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학교교육, 시사보도, 비평·연구, 사적이용과 같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개인 홈페이지에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도기사를 이용한다면 사적이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에의 이용을 사적이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Q MP3파일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97년 당시 음악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 협의에 의해 서비스가 재개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또 무엇이 문제인지 ...

A 음반과 관련한 권리자들로서는 작곡가, 작사가와 같은 저작자가 있고, 그 외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가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기타 권리를 가지며,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한 복제권을, 음반제작자는 직접 제작한 음반에 대해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음반을 이용하여 MP3파일 제작 등 재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저작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로부터 각각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97년 당시 음악파일 서비스업자들이 저작자들의 권리집중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해결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단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현재 저작인접권 관련 단체로부터 또다시 이익을 제기당하여 서비스 중지 사태에 이르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저작인접권자들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음악저작권의 경우에는 싫든 좋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나름대로 집중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관련 권리단체의 난립으로 저작권 문제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점서비스계약 체결 등 권리의 남용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업계 당사자들은 현재의 MP3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인접권을 집중적, 일률적으로 신탁관리할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 MP3 관련 권리 관계도

문의 : sycho@dpc.or.kr